

내 무 무

내지행 181.5 - 1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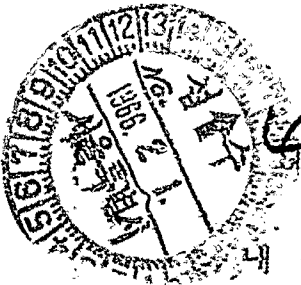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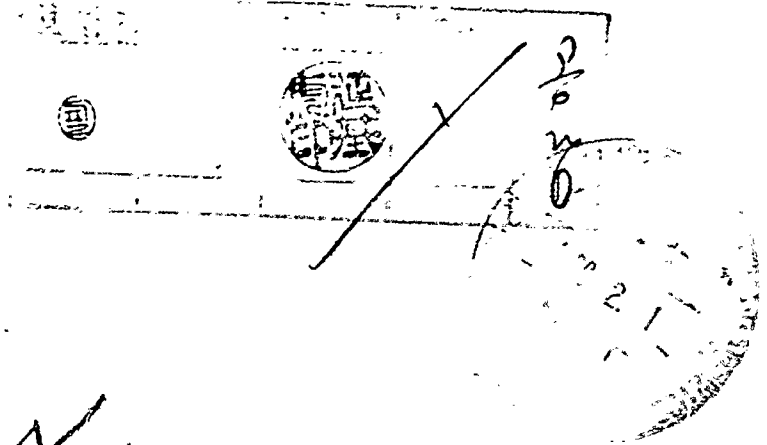
1966. 2. 1.

수신 수신처 참조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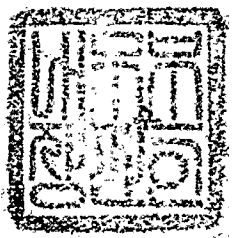
제목 지방 공무원 임용령 개정 통지

대통령령 제 2386 호 (66. 1. 31. 자) 로 별지와 같이 지방 공무원 임용령의 개정공포 되었으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함.

수발 : 개정안 1 부. 끝



내무부장관 양찬



수신처

나 1 - 11.

(336)
(1966. 1 - 27 P)

001

地方公務員任用令中改正의件

地方公務員任用令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중 “昇進” 다음에 “昇給”을 挿入하고 同條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追叙”라 함은 死亡한 者를

死亡當時의 職級보다 上位의 職級

으로 任用하는 것을 말한다

第5條第1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第4項중 “任用할 수

있다"를 "追叙할 수 있다"로 하며

同項但書を削除한다

다만 特殊한 事情으로 인하여 任用

狀에 記載된 日字까지 任用狀을 交

付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交付받은

날에 效力을 발생한다

第9條에 但書を 다음과 같이 新設한

다

다만 公開競爭昇進試驗에 合格된 者

를 그 合格된 職級에 任用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條本文중 "缺員每職에 대하여

3倍數의 범위안에서"를 "任用하고자

하는 缺員數에 대하여 3級에의 任用
에 있어서는 3-倍數 4級甲類이하의
任用 및 技能職의 任用에 있어서는
5倍數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第1/1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중 "勤務成績의 評定" 다
음에 " 및 昇進審査委員會의 審査評定"
을 同條第6項중 "昇進候補者名單의
作成時期와 方法" 다음에 " 및 昇進審
査委員會의 設置와 運營"을 각각 挿
入한다

① 任用權者는 昇進에 필요한 要件을
갖춘 公務員에 대하여 勤務成績評定

30% 經歷評定 및 40% 및
公務員訓練成績 10% 의 昇進審査委
員會에서 審査評定한 評定 및 20%
의 比率에 의한 昇進候補者名簿를
職級別로 作成한다

第12條第1項중 "5級은 1階級에"
를 "5級은 1級類에" 로 한다

第14條第2項중 "3級以上 公務員"
을 "3級乙類公務員" 으로 한다

第16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
設한다

③ 2級이상 公務員의 轉職에 있어서

는 第1項 및 第43條 第1項의 規

定을 適用 하지 아니한다

第 16 條의 2 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 16 條의 2 (補職管理의 原則) ① 任

用 推着者는 모든 소속公務員에 대하여

그 級類에 相應한 일정한 職位를

賦與하여야 한다

② 任用 推着者는 소속公務員의 補職에

있어서는 당해 公務員의 專攻分野

訓練 또는 勤務 經歷 및 適性 등을

考慮하여 適格한 職位를 賦與하여야

한다

第 17 條 第 1 項 担書를 削除하고 同項各

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 第 2 項 중

"第5號"을 "第4號" 및 "第6號"로
한다.

1. 職制上의 最下單位補助機關(課를 포함한다)내에서의 轉補
2. 機構의 改編 또는 職制 및 定員의 變更이 있는 경우
3. 당해 公務員의 昇進 또는 降任으로 인한 경우
4. 특수한 訓練經歷이 있는 者를 專攻分野에 補職하는 경우
5. 懲戒處分을 받은 경우
6. 刑事事件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⑦ 條件附 또는 試補任用중에 於て

公務員의 轉轄

第 19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 19 條 (降任의 原則) 公務員을 降任할 때에는 마로 下位級類의 職位에 任用함을 原則으로 한다

第 23 條 중 "內閣事務處長" 을 "總務處長官" 으로 하고 同條 第 1 項 및 第 2 項 중 "3 級이상公務員" 을 "3 級乙類公務員" 으로 하며 同條 第 2 項 중 "昇進試驗應試者名單에 應試願書를 첨부하여" 를 削除한다

第 24 條 ^중 "前條 第 1 項에서 第 3 項" 을

前條第4項"으로 한다

第2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7條(試驗科目) 任用試驗의 科目

에 관하여는 國家公務員에 適用하는

規定을 準用한다

第29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不可避한 事由로 公告된 內容을 變更하

는 경우에는 試驗實施日 7日前까지 그

變更된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30條중 "3級"을 "3級乙類"로

한다

제31條중 "應試資格은 公務員任用試

驗에 準한 規則"을 "應試資格에 관

하여는 國家公務員에 適用하는 規定”
으로 한다

第32條第2項但書를 削除하고 第3項
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第1項本文의 第2次試驗은 試
驗實施機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選擇型과 記入型으로 가름할

수 있으며 同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方法은 選擇型을 原則으로

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第2次
試驗은 面接 또는 實技試驗의 方法
에 의한다

第33條의 題目中 “3級”을 “3級

乙類 "로 하고 同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3級乙類 公開競爭昇進試驗은 第1次와 第2次試驗으로 區分하여 實施한다. 다만 試驗實施機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3次試驗을 課할 수 있다.

第34條중 "3級"을 "3級乙類"로 한다.

第3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5條 (3級乙類特別昇進試驗方法)

① 3級乙類特別昇進試驗은 第1次와 第2次試驗으로 區分하여 實施하되

試驗實施機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3次試驗을 課할 수 있다

다만 試驗實施機關은 필요에 따라

第1次와 第2次試驗을 併合하여 實

施할 수 있다 ✓

② 第30條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

定은 前項의 試驗에 準用한다 다만

前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方

法은 選擇型을 原則으로 한다

第36條 중 “3級”을 “3級乙類”로

하고 同條 第1項 중 “缺員每職에 對하

여 3倍數”를 “任用하고자 하는 缺員

數에 對하여 3倍數”로 하며 同條 第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3級乙類特別昇進試驗에서 2회에

결쳐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1年 동안 그 試驗

을 要求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2號의 規程에 의한 事由는

이를 通算한다

1. 全科目總點의 60%미만이거나

1科目이상 40%미만으로 不合格

한 者

2. 正當한 事由를 查하여 미리 申

請함이 없이 試驗에 不應한 者

第 37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 37 條 (特別任用試驗方法) ①特別任

用試驗은 第 39 條第 1 項第 1 號 또는

第 4 號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筆記試驗과 面接試驗 또는 實技試驗

의 方法에 의하고 第 39 條第 1 項第

2 號 또는 第 3 號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書類審査와 面接試驗의 方

法에 의한다

②前項의 筆記試驗方法에 관하여는

3 級이상公務員의 試驗에 있어서는

第 35 條 4 級 5 級 및 技能職公務員

의 試驗에 있어서는 第 32 條중의

關係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第3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9條 (特別任用試驗의 應試資格)

① 特別任用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 에 해당하여야

한다

1.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

이나 이에 準하는 機關에서 任用

豫定職에 關聯이 있는 職務分野에

서 任用豫定職級에 相當하는 勤務

또는 研究經歷이 1年이상인 者로

서 學歷別經歷基準에 相當하는 者

2. 任用豫定職에 關聯이 있는 資格

證所持者가 任用豫定職級에 해당하

는 勤務 또는 研究經歷이 1년이

상인 者로서 資格別經歷基準에 해

당하는 者

3. 退職한 公務員이 退職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退職 당시의 職級에

再任用되고자 하는 者

4. 國家公務員法 第28條第1項第4

號의 規定에 의한 大學院卒業者로

서 任用전 3년 이내에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機關에서 實務修習

을 畢한 者

② 前項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

더라도 任用前 3年 이내에 任用豫
定職에 關聯된 勤務 또는 研究經
歴이 缺는 者 또는 前在職機關의
在職당시에 勤務成績이 極히 不良
하거나 非違行爲로 인하여 退職한
者는 應試할 수 없다

③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學
歷別經歷基準, 同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資格別經歷基準, 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任用職級과 實務修習
에 관한 事項은 國家公務員의 特
別任用試驗의 應試資格에 관한 該
當基準 및 規定을 準用한다

第40條中 “前任在職職位 研究期間에 相應한 職位”를 “前任在職 職級 資格證 또는 勤務 研究經歷에 相應한 職位”로 한다

第42條의 題目中 “및 轉補制限”과 同條第2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43條第1項但書中 “3年이내에 原職級으로 轉職할 때”를 “3年이내에 原職列로 轉職할 때(4級이하 公務員이 同期間중에 原職列의 3級이상 公務員으로 轉職하는 경우를 除外한다.)”로 한다

第43條第2項 및 第3項을 다음

驗에 있어서는 試驗實施機關이 試驗實施段階의 順序를 變更하여 實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前段階에서의 試驗에 合格하지 아니하면 다음 段階의 試驗에 應試할 수 있다

第 45 條 第 2 項 및 第 3 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 및 新設한다

② 第 1 次 試驗과 第 2 次 試驗의 配奩比率는 同率로 하고 第 3 次 試驗(面接 또는 實技 試驗)은 配奩함이 없이 合格 不合格만 決定한다

③ 試驗에 있어선 最終 合格者의

決定은 第3次試驗合格者(第3次試驗의 方法을 거치지 아니하는 試驗에 있어서는 第2次試驗合格者) 중에서 第1次試驗과 第2次試驗成績을 合算한 成績順位에 의하며 第1次와 第2次試驗을 併合하여 實施하는 경우 또는 第1次 第2次의 區別없이 하나의 段階로 試驗을 實施하는 경우에는 그 試驗成績順位에 의한다. 다만 技能職公務員에 대하여는 前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技試驗의 成績을 最終合格決定에 合算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配與比率은 內務部長官
의 승인을 얻어 試驗實施機關이

정한다

第 46 條 第 1 項 중 “競爭試驗은”을

“競爭試驗의 各段階別 合格決定은”

으로, “每科目 40%”를 “1科目이

상 40%”로 하고 同條 第 2 項 중 “

高得點者를 合格者로 한다”를 “得

點者를 合格者로 하되 總點의 60%

이상의 得點者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高得點者順으로 合格者를 決定한

다”로 한다

第 49 條 第 1 項 中 “新規在用試驗應試

者”를 “各種試驗應試者”로 하고

“200원”을 “300원”으로 “150원”

을 “200원”으로 한다.

第51條第2項中 “懲戒事由에 해당

하여”를 削除한다.

第5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2條 (條件附任用期間) 現職公務員

(國家公務員을 포함한다)으로서 上位

職 또는 他職列의 公開競爭新規任用

試驗에 合格한 者를 新規任用할 때

에는 工任用前의 在職期間을 條件附

任用期間에 算入한다.

第53條중 “3級”을 “3級乙類”

으로 한다

別表 / 증 2. 行政職群의 "社會職列"

5. 農林職群의 "蚕業職列" 및 7.

保健職群의 "衛生職列" 을 각각 削

除한다

別表 / 증 9. 水産職群의 水産職列의

職級名稱 중 "澳撈" 를 각각 "水産"

으로 한다

別表 / 증 "10. 施設職群" 다음에

通信職群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職群 / 職列	級類 / 級	2 級		3 級		4 級		5 級	
		甲類	乙類	甲類	乙類	甲類	乙類	甲類	乙類
通信 / 有線通信				地方有線 通信技正	地方有線 通信技佐	地方有線 通信技士	地方有線 通信技補	地方有線 通信技員	地方有線 通信技員補

職群 職列	級類 級列	1級	2級		3級		4級		5級	
			甲類	乙類	甲類	乙類	甲類	乙類	甲類	乙類
通信	無線通信				地方無線 通信技正	地方無線 通信技佐	地方無線 通信技士	地方無線 通信技士補	地方無線 通信技員	地方無線 通信技員補

別表 2 를 別紙와 같이 한다

別表 3 및 別表 4 를 각각 削除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経過規定) 第 11 條 第 1 項 및 第 39 條의 規定은 이 令에 의한 關係 法令 및 規則이 制定될 때까지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③ (同前) 이 令 施行당시 別表 1 의

行政職群의 社會職列의 公務員은 同職群의 行政職列의 해당職級으로 農林職群의 蚕業職列의 公務員은 同職群 農業職列의 해당職級으로, 保健職群의 衛生職列의 公務員은 同職群 保健職列의 해당職級으로 각각 任用된 것으로 보이며, 工業職群의 機械職列의 公務員중 有線通信業務에 종사하는 4級 및 5級 公務員은 이 令에 의한 通信職群의 有線通信職列의 해당職級으로, 無線通信業務에 종사하는 4級 및 5級 公務員은 이 令에 의한 通信職群의 無線通信職列의 해당職級으로 각각 任用된

것으로 본다.

④ (同前) 이 령 施行 당시 別表 2 의
 自動車運轉, 印刷, 化工, 園藝, 試驗, 製
 藥, 實驗, 看護, 打字, 筆耕, 製圖, 守衛
 製本, 監視, 傳達職列의 公務員은 이
 령에 의한 行政補助職群의 雜務職列의
 해당職故으로 각각 在用된 것으로 본
 다.

⑤ (同前) 技能職職級表중 行政補助職
 群의 雜務職列의 序年은 打字職列에서
 在用된 公務員은 40歲, 印刷, 看護,
 筆耕, 傳達職列에서 在用된 公務員은
 60歲, 기타는 55歲로 한다.

別表 2

技 能 職 職 級 表

職 類		第1等級	第2等級	第3等級	第4等級	第5等級	第6等級	第7等級	第8等級	俸 年
1	土 木		地 方 土木手長	地 方 土木員	地方土木員 地方土木手	地 方 土木手	地 方 土木手	地方土木 補助手	地方土木 補助手	5.5
2	建 築		地 方 建築手長	地 方 建築員	地方建築員 地方建築手	地方建築員 地方建築手	地 方 建築手	地方建築 補助手	地方建築 補助手	5.5
3	通 信		地方通信手長 地方通信員	地 方 通信員	地 方 通信員	地 方 通信手	地 方 通信手	地方通信 補助手	地方通信 補助手	5.5
4	電 氣			地 方 電氣員	地 方 電氣員	地 方 電氣手	地 方 電氣手	地方電氣 補助手	地方電氣 補助手	5.0
5	汽 罐				地 方 汽罐手	地 方 汽罐手	地 方 汽罐手	地方汽罐 補助手	地方汽罐 補助手	5.0
	機械運転					地方機械 運転手	地方機械 運転手	地方機械 運転補助手	地方機械 運転補助手	5.0
	技 工		地方技手長 地方技工	地 方 技工	地 方 技工	地 方 技工手	地 方 技工手	地方技工 補助手	地方技工 補助手	5.5
6	造 林		地 方 造林手長	地 方 造林員	地 方 造林員	地 方 造林手	地 方 造林手	地方造林 補助手	地方造林 補助手	5.0
7	船 舶 航 海	地 方 船 長	地 方 船 長	地 方 船 手	地方操舵手 地方船手	地方操舵手 地方船手	地方操舵手 地方船手	地方操舵手 補助手 地方船 補助手	地方操舵手 補助手 地方船 補助手	5.5
		地 方 甲 板 員	地 方 甲 板 員	地 方 甲 板 員	地方甲板員 地方甲板手	地 方 甲 板 手	地 方 甲 板 手	地方甲板 補助手	地方甲板 補助手	5.5
8	行 務 助	地 方 助 務 員	地 方 助 務 員	地 方 助 務 員	地 方 助 務 員	地 方 助 務 手	地 方 助 務 手	地方助務 補助手	地方助務 補助手	

備考. 船務職列記の令の施行に並 別添の 職則の 在職中の 技能職公務員を 任用管の 工則の